

2025. 8. 14.(목) 16:00

부여 롯데리조트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회의자료



충청남도시장 · 군수협의회

I.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 1. 건의사항 처리결과 5

II. 시·군 건의사항 25

- 1.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 보령시 25
- 2. 정부차원의 반값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 : 보령시 26
- 3. 드론 비행승안개인정보 촬영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 공주시 27
- 4. 주유소 지역화폐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제한 제외 : 아산시 29
- 5.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도비 지원 : 아산시 31
- 6.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 : 논산시 ... 34
- 7.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청 : 계룡시 36
- 8.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접근제약 완화 : 당진시 ... 38
- 9.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 : 금산군 40
- 10.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로 기업 애로해소 : 금산군 ... 41
- 11.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을 도입 : 부여군 42
- 12.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 부여군 43
- 13. 김 가공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 : 서천군 44
- 14.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관련 환경규제 완화 건의 : 서천군 ... 46
- 15.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청양군 ... 47

- 14.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 : 홍성군 48
- 14. 사도 및 사군구 선거법 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예산군 ... 52
- 15.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체사업(해상풍력) 지원 : 태안군 ... 53

- 1. 민선8기 3차년도 예산집행 결산감사 보고 58
- 2. 민선8기 4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63
-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워크숍 세부일정 심의 ... 67
- 4. 호우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심의 68

- 1. 제28회 보령머드축제 : 보령시 71
- 2. 제71회 백제문화제 : 공주시 73
- 3. 제3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 : 서천군 74
- 4. 제6회 예산황새축제 : 예산군 75
- 5. 2025년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 : 태안군 77
- 6. 차기회의 개최 안내 : 협의회 78

- 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주요내용 ... 81
- 2. 민선8기 1-3차년도 우수 건의사항 선정결과 보고 83
- 3.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85

I. 정책건의의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5
--------------------	---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현 황
계			42건 / 처리 10건(수용: 6건, 수용곤란: 4건), 검토중: 32건	
충청남도			2건 / 처리 2건(수용: 1건, 수용곤란: 1건), 검토중: 0건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25.05.	홍성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사업 대상시설 다양화	수용곤란 (결과①)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25.05.	예산	지자체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 변경 유예 건의	수용 (결과②)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0건 / 처리 8건(수용: 5건, 수용곤란: 3건), 검토중: 32건	
국토교통부	22.11.	계룡	계룡IC앞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두마~연산)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23.02.	계룡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	검토중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23.04.	아산	법정부 차원의 공무직 복무 관련 상위법령 마련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3.06.	홍성	면(面) 지역 내 건축물 건축 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 완화	검토중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23.08.	보령	마리아항만법 규제 완화로 해양 新산업 육성	검토중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23.11.	논산	충남권역 국립보훈 요양시설 건립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검토중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	23.11.	예산	국립 공주대학교 의대 신설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24.03.	태안	국도38호[이원~대산]해상교량 건설 지원	검토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4.05.	공주	75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지원	검토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24.05.	논산	청년창업농의 농지은행 임대차계약과 시설설치 승인 절차 일원화	검토중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방 식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4.05.	부여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이민청 신설 및 이민법 제정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24.05.	홍성	신창역~홍성역간 수도권 전철 연장운영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24.05.	태안	「태안~서산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건설 계획 반영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4.07.	예산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세분화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24.07.	논산	배수개선사업 대상 기준 완화 건의	검토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25.03.	보령	신규 국고여객선 건조에 따른 외연도항 내 전용 접안시설 구축	검토중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5.03.	공주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속처리	수용 (결과③)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5.03.	아산	아·통장 선출근거 마련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수용근관 (결과④)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25.03.	서산	마을안길 편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수용근관 (결과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5.03.	논산	농촌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수용 (결과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5.03.	당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 기준인력 등 분리	검토중
행정안전부 (주민과 자치분권제도과)	25.03.	금산	이장 선출 갈등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수용근관 (결과⑦)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5.03.	부여	건축물 해체신고에 따른 건축사 등 검토제외	수용 (결과⑧)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25.03.	서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방안 건의	검토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25.03.	청양	공직선거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설정	수용 (결과⑨)

소관부처	건의 시기	건의 시군	건 명	처 리 방 식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과)	25.03.	예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기준 일부완화	수용 (결과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25.05.	보령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개정	검토중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25.05.	공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의 예산편성 지침 개선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5.05.	아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농지전용 허용	검토중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5.05.	서산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내 지역업체 사용자 가산점 제도 신설 건의	검토중
경찰청 (교통안전과)	25.05.	논산	무인교통단속장비[단속카메라] 과태료 지자체 수입 전환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강정책과)	25.05.	논산	축제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검토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25.05.	계룡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변경	검토중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25.05.	금산	중부 동서고속도로(충남서천~경북김천 간) 신설	검토중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25.05.	부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검토중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25.05.	서천	금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포함 건의	검토중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5.05.	청양	외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요양보조사 도입	검토중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5.05.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검토중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25.05.	예산	지자체 주요관광지 입장객통계 변경 유예 건의	검토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5.05.	태안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대상의 완화	검토중

－ 건의사항 처리결과(충청남도) －

①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사업 대상시설 다양화		
검토기관	道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팀 주무관 한소윤 (전화 : 041-635-4053)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온실형태 다양화 요청
 - (현재)연동형 스마트팜 신축 기준 → (요청)단동형 등 다양한 형태

□ 검토 결과

-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신규 청년 창업농이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임.
 - ※ 청년자립형 개소당 0.3~0.5ha 신축 4.5억원(보조 70%, 자부담 30%) 50개소 지원
- 스마트팜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및 온실 운영관리가 용이한 연동형태로 지원.
 - * 충남형 2세대 : 원격 모니터링 + 복합환경제어 연동 + 정밀생육관리기술
- 단동형 소규모 온실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시군 자체사업(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등을 활용 가능.

②	지자체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 변경 유예 건의		
검토기관	道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주무관 권휘원 (전화 : 041-635-3883)	검토결과	수용 (2025. 5.)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 개요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변경계획을 철회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적극 건의

□ 검토 내용

- (통계근거)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정부승인번호 제113005호)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수** 발표
 - * 2025년: 230개소(유료 105, 무료 125)
 - ** '23년 32,000천명, '24년(목표) 35,000천명, '25년(목표) 40,000천명
- (입력기준) ① 입장권 등 발권, ② 사전예약제도 등에 의한 집계, ③ 무인계측기를 단일입구 등 명확한 폐쇄형 (살내)공간에 설치한 경우
- (변경방침) 무인계측기가 설치된 무료 또는 야외 개방관광지를 입장객 통계에서 제외('25. 3월)
 - (제외사유) 무인계측기의 경우 중복집계 및 측정오류 사례 존재
 - *주요 제외지점: 예산시장장터광장('24년 4,041천명), 마곡사('24년 818천명)

□ 검토 결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입장객 통계 변경계획 철회 또는 유예 건의(6. 17. 공문시행)
 - 통계의 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이유로 방침 철회 불가 답변 수신
 - ※ 道는 시·군 의견과 동일하게 철회 건의

□ 향후 계획

- 신규 유료 관광지점 발굴 노력('25년 유료 주요 관광지점 105개)
 - 해양치유센터, 파크골프장, 골프장, 글램핑장 등
- 기존 무료 관광지점은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출입구 단일화 등)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김지혜 (전화 : 044-202-3307)	검토결과	수용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협조부서(부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인증기관 부족, 기간 지연 및 평가 기준 객관성 부족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 인증기관 확충,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일원화

□ 검토의견 : 수용

- 우리부는 인증 기간 지연 및 평가 기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관 추가지정공고, 인증기준 해설서, 인증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방안등을 준비중임
- 따라서 연내에 인증기관 확대 및 인증기준 해설서 배포 등을 통해 인증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④	이·통장 선출 근거 마련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주재덕 (전화 : 044-201-3374)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문제점)아산시 소재 공동주택 특정감사(23년 3월)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장 선출 관련 선거관리 업무 추진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적
 - 공동주택 특정감사 후 관내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장 선출 거부 움직임 확산이 우려되고, 이통장 장기 미선출 지역 확산시 행정 공백에 따른 주민 피해 우려
- (건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통장의 선출’ 추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이·통장의 업무 범위, 선출 절차 등은 자치법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규정한 이·통장의 업무는 관할 행정구역의 관리에 해당할 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제9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 전체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등을 통해 이·통장의 선출절차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이·통장의 선출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⑤	마을안길 편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오다은 (전화 : 044-215-4312)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토지 매매시 마을안길 편입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 향후 각종 세금 감면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기부채납 유도
- 문제점
 - ┌ 정비 시 개별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 └ 소유자 변경 시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
 - ⇒ 소유자와 갈등 발생
 - 보상 협의, 예산 부족 등 마을안길 편입 토지 수용 현실적 어려움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통행로 막음 등)로 인한 개인간 분쟁 지속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감면 지원 중
 - 마을안길 도로정비 사업을 공공사업에 따라 추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다만, 공익사업과 별개로 마을안길 편입 토지라는 이유로 사인간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여타 토지와의 과세 형평 저해 → 예산확보, 국유지 등을 활용한 협의보상 우선 추진 필요

⑥	농촌체험 농가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이상진 (전화 : 044-201-1744)	검토결과	기시행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가족단위·어린이 농촌체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체험농장을 기반으로 한 농촌교육농장, 휴양마을 등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 농촌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농장에 관한 농지법 규정 신설 건의

□ 검토의견 : 기시행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 가능하여 별도의 법령개정 불필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⑦	이장 선출 갈등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사무관 명지수 (전화 : 044-205-3147)	검토결과	수용곤란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협조부서(부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이장 선출은 주민 과반수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직접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투표권, 선거권 등 세대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이 빈번함
- 행정기관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선거인명부 제공이 불가하여 마을총회 시 세대 열람 등 공적 명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통장 선출 시 주민등록표(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개정 건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세대명부 등을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법제처 17-0167)
- 이는 주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공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명시한 공문 등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 개별 법령상 공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 없이는 해당 공무의 수행이 불가하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은 읍·면장이 해당 지자체 규칙에 따라 임명하며, 읍·면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임명 후보자를 마을 규약 등에 따른 선거나 읍·면사무소 심사 등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 이장 임명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거 등의 임명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이장 선거는 읍·면장의 이장 임명을 위한 부수절차인 점, 현재도 마을마다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이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점, 주민등록표 제공 없이는 이장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표 제공의 이익이 개인정보보호의 법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⑧	건축물 해체신고에 따른 건축사 등 검토제외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조성민 (전화 : 044-201-4989)	검토결과	수용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현재 「건축물관리법」에는 해체 허가뿐만 아니라, 해체 신고 시에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있음
- 비도시지역 건축물은 대부분 단층이며, 주변 건축물과 떨어져 있어 해체작업 시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럼에도,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 발생으로 주민 부담 가중
- ☞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 생략 필요

□ 검토의견 : 일부수용 (수정수용, 관련법안 국회 既 발의)

- 해체 신고·허가 시에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작성 또는 검토하도록 하는 목적은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내실있게 작성되고 해체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임
 - 이는, '21.6월 광주시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22.8월 시행된 사항이며, 우리 부는 한층 강화된 건축물 해체제도 시행으로 붕괴 등 해체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①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강화, ② 해체심의제 도입, ③ 상주감리 도입 등
 - 그럼에도, 그간 해체 건축물의 규모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공사기간 지연 및 검토비용 발생에 따른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우리 부는 건의 내용과 같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해체제도 간소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해체 공사의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다만, 최근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 범위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해체절차 간소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23.4~12.)

○ 이를 토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24.12) 됨

- 개정안 통과 시, 하위법령에서 해체 절차 간소화 대상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 다만, 비도시지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농어촌 빈집,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위험성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여 해체계획서 검토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⑨	공직선거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설정		
검토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사무관 심현민 (전화 : 02-3294-8401)	검토결과	수용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어 국회의원·지방의원 대비 제약이 과도하며, 주민 알권리·정보접근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가 있음. 「공직선거법」 제86조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함.

현 행	개 정(안)
홍보물 분기별 1종 1회 허용	홍보물 월별 1종 1회 허용

- 복잡한 선거법으로 사업 추진시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선관위, 중앙선관위 간 상이한 해석으로 업무 혼선이 발생함.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개선 및 안정적인 지자체 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 검토의견 : 일부수용(국회의 입법정책적 결정사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 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마214 결정 등).
- 건의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여부는 동 조항의 입법 목적, 선거의 공정성 확보, 정치활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2022년 제작)”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시대변화 및 국민 법감정, 변경된 판례 등이 법규 운용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⑩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일부 완화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이정식 (전화 : 044-201-4908)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2025. 3.)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 개정('21.3)으로 군지역은 2개소 내외로 활성화지역 지정 가능
-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수 제한으로 인한 전략계획 변경 필요성 및 지역별 재생사업 수요증가 대응에 어려움 발생
- ⇒ 군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지정 기준 완화 건의(現 2개소→4개소 내외)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도시규모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수 제한은 도시 지역내에서 활성화 지역을 무분별하게 과다지정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으로,
 - 실효성있는 재생사업의 추진 및 정책재원(국비지원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정 개소수 제한은 필요
- 따라서, 지정 개소수의 완화는 제한의 합리성, 제도운용의 실효성, 사업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Ⅱ. 시·군 건의사항

1.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보령)	25
2. 정부차원의 반값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보령)	26
3. 드론 비행승인·개인정보 촬영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공주) ...	27
4. 주유소 지역화폐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제한 제외(아산) ..	29
5.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도비지원(아산)	31
6.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논산)	34
7.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청(계룡)	36
8.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접근제약 완화(당진) ...	38
9.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금산)	40
10.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로 기업 애로해소(금산)	41
11.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률 도입(부여)	42
12.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부여)	43
13. 김 가공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서천)	44
14.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관련 환경규제 완화 건의(서천)	46
15.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청양) ...	47
16.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홍성)	48
17. 시·도 및 시·군·구 선거법 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산)	52
18.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체사업(해상풍력) 지원(태안)	53

①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보령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석탄화력발전의 질서있는 전환 실현 및 지역경제·고용·산업·전력계통 등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현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탈석탄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폐지
 - ‘36년까지 노후석탄화력 28기 폐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충남도) 보령화력 #5,6, 태안화력 #1~6, 당진화력 #1~6 [계: 12기]
 - ※ 보령 #1,2 조기폐쇄(‘20.12.) → 인구 10만명 붕괴, 지역내총생산 3,380억원 감소

□ 추진경위

- 2024. 9.: 국회의정토론회(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방안)
- 2024.12.: 산업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4차 / ‘24.12. ’ 25.2., ‘25.4.(2회)]
- 2025. 4.~: 석탄폐지 특별법 정부안 산자위 심사중(이철규의원 등 14인)

□ 문제점

- 道 지역경제 지표 하락(생산유발효과 19.2조원, 부가가치유발 7.8조원, 일자리 1.7만명↓)
- 석탄화력발전 폐지 이후 폐지지역 지원체계 및 대책방안 미비
- 노후석탄화력 대체건설 타시도 분산발전에 따른 지역산업 붕괴 직면

□ 건의사항

- 국회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신속 제정 건의
 - 정의로운 전환특구, 기금지원, 지역·고용·기업부문 직접적·체계적 지원방안

작성기관

소 속 : 보령시(에너지과)

성명: 남룡현 ☎041)930-6713

②	정부차원의 반값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보령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추진기간	'26. ~	소요예산	-		

◆ 영농자재 수급불안,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농들의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농자재 지원 사업 도입

□ 필요성

- 매년 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가의 농업경쟁력 약화
- 지원이 부족한 소농들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 필요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현 황

- 19년 강원도 인제군을 시작으로 23년 강원도 전역 농자재 반값 지원
 - *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 강원도 전국 3위 / 충남은 7위
- 보령시는 금년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도입(지원부분 전액 시비)

< 2025년 보령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10,000농가
 - 경작면적 1천㎡이상 ~ 5천㎡미만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총사업비) 2,000백만원(시비 1,000 / 자담 1,000)
- (지원내용) 영농자재 구입비의 50% 지원(농가당 최대 10만원 한도)

□ 건의사항

- 농가 소득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일관적이고 규모있는 반값농자재 지원정책 도입(국·도비 반영)

작성기관

소 속 : 보령시(농업정책과)

성 명: 이상동 ☎041)930-7602

③	드론 비행승인·개인정보 촬영신고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개인정보위원회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드론 비행 승인과 개인정보 촬영 신고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신청 체계 구축으로 이중 행정절차 해소

□ 현 황(이원화 처리 체계)

- 드론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관할 지방항공청, 군부대)
 - 비행금지·제한구역 내 드론 운용 시 사전 비행승인 필수
 - 인근 군사시설 보안유출 우려로 항공촬영 시 사전허가 신청
- 개인정보포털 :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촬영 신고(개인정보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촬영 신청
 - 드론 촬영 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여 개인정보 포털 신고 필요

□ 문제점

- 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 동일한 드론 촬영 행위에 대해 2개 기관의 시스템 각각 별도 신청
 - 드론 행정 활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정처리 시간적 부담
 -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업무 지연 및 민원 불편 증가
- ※ 드론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3~7일, 개인정보포털 2~3일 소요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원스톱 신청 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에 각각 별도 신청하는 현행 체계에서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여 신청·신고 처리의 이중절차 해소
 - 드론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내 개인정보 촬영신고 기능을 통합하여 자동 처리체계를 구축, 신청자는 1회 신청으로 모든 승인·신고 완료

□ 참고사항

○ 관련법률

◆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관내 드론 관련 참고사항

- 비행승인 관할 : 청주공항출장소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 촬영허가 관할 : 32사단 (세종 금남면 국곡리)
- 비행금지 구역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대전광역시 원자력연구원(P65) 18.6km 이내 비행금지
 - ↳ 무릉동, 석장리동, 상왕동, 반포면, 계룡면 일부(대전 인접지역)
 -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논산기지 관제권 9.3km내 비행금지
 - ↳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일부 (논산 인접지역)
 - 계룡산국립공원 내 계룡면, 반포면 일부 비행금지

작성기관

소 속 : 공주시(민원토지과)

성명: 이권석 ☎041)840-8253

④	주유소 지역화폐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 제한 제외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추진기간	2025. 1. ~ 12.	소요예산	-		

◆ 대형 유통점과 달리 생활밀착형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소상공,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유소 지역화폐 매출액 30억 이상 사용 제한 제외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민생회복 정책 실현

□ 문제점

- 주유소는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 자영업자, 농업인, 택시업계, 배송기사, 중소기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
 - 실제 아산시민 민원 및 불편 사례에서도 “아산페이 사용처 중 주유소 제외에 따른 불편” 이 반복적으로 제기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갈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인
 -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유류비 지원 및 할인 수단 확보는 시민 가계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생계 안정, 물류비 절감 등 다차원 효과 발생

□ 정책방안

- 30억 매출액 지역화폐 사용 제한처 중 주유소 예외 허용은 국가적 물가안정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수단으로 새정부 최우선 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중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

□ 건의사항

-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민 가계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생계 안정, 물류비 절감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정책 실현을 위하여
 - ➡ 30억 이상 매출액 지역화폐 사용 제한처 중 주유소 예외 적용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지역경제과)

성명: 임준태 ☎041-530-8407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 ▶ (원칙)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 ▶ (예외)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 가능
 - ❶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 * (예시) 농민수당·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 정책발행 상품권
 - ❷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플랫폼형 사업장은 예외 인정
 - ※ 매장 자체는 비영리 성격, 개별 농민·소상공인이 직접 수익을 취하는 경우여야 함
 - ❸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25.6월 기준) 내 농협 농자재판매장
 - 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유형 분류상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25년 6월 기준) 내 농협 하나로마트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도비 지원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추진기간	2025. 1. ~ 12.	소요예산	할인율 보전분 지방비 중 50% 도비지원		

- ◆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분 지방비 중 50% 도비 지원으로 신속한 충청남도 민생경제 회복 견인 및 소득·소비 역외유출 방지
* 2025년 도비 지원 전무

□ 문제점

-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단계
 - 2017년 30.8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소득 역외유출이 22.3조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를 기록
- 충남 지역민들의 소비 역외 유출은 전체 소비액의 45.3%가 역외 지출
 - 서울(58.1%), 경기(19.0%), 대전(7.0%) 및 전북(2.9%) 등에서 주로 지출
 - * 출처: 2024년 7월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도자료 (충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 유출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충남도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지방비 중 10.6%('22) → 6.5%('23) → 3.7.('24)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도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편성 전무.

□ 지역화폐 도입효과

-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
 - 충남도는 15개 시군 모두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지역화폐 효과는
 - => 생산과 취업의 경우 70% 이상이 지역내 유발
 - => 발행액 기준 생산유발효과 2배 이상
 - * 출처: 아산페이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연구용역<2020년>

□ 건의사항

- 신속한 충청남도 민생경제 회복과 소득소비 역외유출 방지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연간 발행액 대비 할인율 보전분 지방비 중 50%를 도비 지원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지역경제과)

성명: 임준태 ☎041-530-8407

참고자료 1

충남도 및 타 시도 지역화폐 예산 지원 현황

□ 충청남도 아산시 연도별 지역화폐 발행액 및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발행액	예산(재원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2025년	5,000*	500	82(16.4)	-	418((83.6%)
2024년	2,500	250	39.16(15.7%)	9.24(3.7%)	201.6(80.6%)
2023년	2,500	250	32.48(13%)	16.24(6.5%)	201.28(80.5%)
2022년	2,636	263	82.7(31.4%)	27.9(10.6%)	152.4(58%)
2021년	1,704	154	93(60.4%)	13(8.4%)	48(31.2%)
2020년	516	64	41(64.1%)	3(4.7%)	20(31.2)

* 2025년 목표발행액

□ 경기도 평택시 지역화폐 도비 지원 사례

- 경기도는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30~50%를 도비로 지원

(단위 : 억 원)

구 분	발행액	예산(재원별)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2025년	800	84.4	배정예정	42.2(50%)	42.2(50%)
2024년	1,500	103.3	5.4(5.2%)	47.6(46.1%)	50.3(48.7%)

- 2024년 평시 할인율: 6%(명절 등 특별 할인율: 10%)

- 2025년 1~6월 평시 할인율: 6%(명절 등 특별 할인율: 10%)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시 전체 할인율 7%*로 별도 추경 편성 예정

*비율: 국비 2, 도비 2, 시비 3 비율로 매칭 예정

□ 전라남도 지역화폐 도비 지원 사례

- 2024년 국비 지원 종료 후, 추가 발행을 위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 70억 예산을 편성하여 희망하는 지역에 교부

- 2025년에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상반기(1~4월) 도비 지원(17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 방향

(한국행정연구원, 2023)

□ 매출 증가 효과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약 8.33% 증가
- 유상판매와 정책발행 구분 시, 정책발행 비율이 1%p 증가할 경우
→ 매출은 최대 11.24% 증가
-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으로
→ 업종별 매출액이 평균 12.28% 증가하는 효과 있음

□ 고용 창출 효과

- 상품권 공급 비율이 1%p 증가할 때
→ 해당 업종의 평균 종사자 수는 2.10% 증가
→ 사업체 수는 1.39% 증가
-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 종사자 수 최대 10.22%, 판매량 기준 11.40% 증가 추정됨

□ 소규모 사업체(50억 이하) 대상 효과

- 총공급액 비율이 1%p 증가할 때
→ 연매출 50억 이하 사업체는 매출액 4.12% 증가
→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체는 2.95% 증가

⑥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추진기간	2025~	소요예산	-		

◆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확성기 소음으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시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 현황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개최되며, 이에 따른 고출력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민원 증가
- 특히 지자체 청사 주변이나 주거지 인근에서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는 소음으로 인해 시민의 수면권, 휴식권,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음
-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문제점

- 현행 소음 기준이 시간·장소별 생활 실정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
 - 야간·심야시간(해진 후~07:00)조차 현실적인 수면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음
 - 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수면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
 -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 필요
- 소음 측정 방식이 ‘수용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 낮음
 - 확성기 등 실제 소음원이 방출하는 데시벨을 직접 측정하는 기준 부재
 - 경찰의 현장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민 피해 입증 어려움

□ 건의사항

○ 야간심야 활성화 소음 기준 강화 및 시간대 확대

- 특히 주거지역 인근은 야간심야시간 기준을 현행보다 5~10dB 하향 조정
- 유아동 수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야시간 범위를 00시~08시로 확대

○ ‘소음원 기준 측정 방식’ 도입

-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 소음 측정 방식으로 ‘활성기 등 소리 증폭기 위치(소음원)’를 기준으로 한 측정 방식으로 변경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소음 기준표)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비 고

1. 활성화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이하생략

작성기관

소 속 : 논산시(자치행정과)

성명: 신성희 ☎041)746-5212

⑦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청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를 요청함

□ 현 황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되어 오다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이를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
 -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보건소 등」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022년부터 시비로 부담
 - 2025년까지 군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점차 증액
-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 2026년까지는 2021년 수준인 국비(274백만원) 한시적 보전

- 계룡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예 산 액	478	547	839	940
전년대비 증가율	9.6%	14.4%	53.8%	12%
인 원	39	42	49	48

※ 금년도는 지방이양 첫해(2022년) 대비 96% 예산 증액

□ 문제점

- 사회복지요원이 필요한 시설에서 추가 인력을 요구해도 재정적 부담으로 지원 한계 발생
- 2027년부터는 국비 한시적 보전도 없어지고 오롯이 지자체 부담

□ 건의사항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국방은 국가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사무임
 - 병역의 의무인 사회복지요원 사업은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담을 이양함
-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강력 요구

작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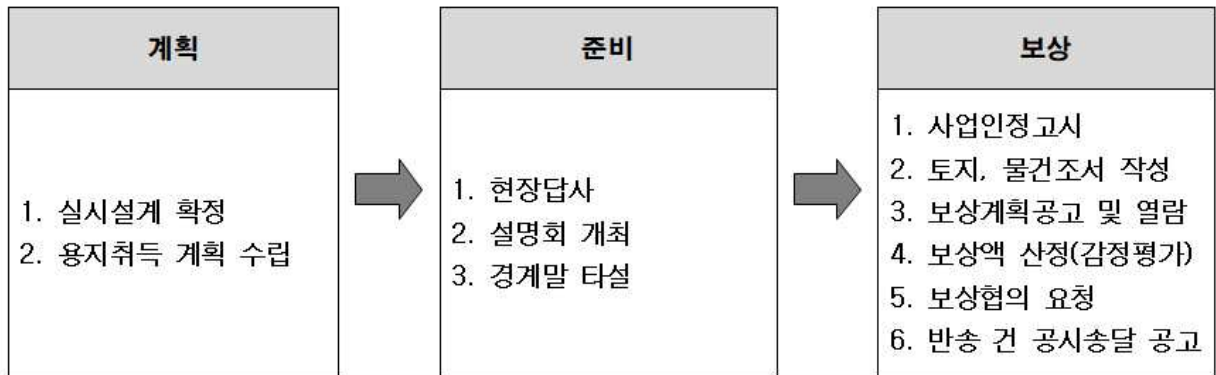
소 속 : 계룡시(사회복지과)

성명: 김인경 ☎042)840-2311

⑧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접근제약 완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추진기간	2026년	소요예산	-		

-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행정활동으로, 토지 등 이해관계인의 정확한 개인정보 확인이 필수
- ◆ 정당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해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확한 근거 마련 건의

□ 보상업무 절차



□ 문제점

- 공익사업 보상업무 추진 시 활용하는 등기부등본의 주소 미현행화로 인해 우편 반송률이 32%(24년 당진시 기준)에 달하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 우편발송 현황

(2024년 당진시 주요도로 보상사업 기준, 단위: 건)

우편발송(계)	배달완료	반송	
295	200	95	32%

- 반송사유

(2024년 당진시 주요도로 보상사업 기준, 단위: 건)

계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95	22	21	31	21

- 우편 반송건과 우편 수령 후 연락이 없는 보상 대상자에 대하여 보상 독려 등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현주소, 전화번호 등)가 필요한 실정임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 조회 요청 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업무에 차질 발생

□ 건의사항

-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 건의
- 법률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

제○조의○(개인정보의 열람 및 활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인, 점유자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의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사항 : 공공기관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조항 신설

제18조의 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예외)

11. 공익사업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도로과)

성명: 이강민 ☎041)350-4372

⑨	지방인구 소멸에 따른 귀농인 유치지원 확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5. 7. .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추진기간	2025	소요예산	3,000억		

-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대상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20~2024)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전국		3,000	3,000	3,000	2,590	1,813	1,500	농협자금을 이용한 저금리 융자사업 (대상자선정 : 2회/년)
충남	1,746	355	354	310	327	400	107 (상반기)	
금산	162	35	40	35	29	23	7 (상반기)	

- 정책자금 전국 지원 총액 축소 : 2022년 3,000억 → 2025년 1,500억
- 지원내용 : 대출금리 2.0%, 대출한도 375백만원(농업창업 300, 주택지원 75)

□ 문제점

- 정책자금 지원 축소로 인한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감소
- 스마트팜 시설 및 농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 부담의 어려움

□ 건의사항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확대 : 1,500억 → 3,000억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현 행	개 정 안
○ 대출금리 : 2.0%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 1.5%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5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1억원 한도 이내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성명: 강정재 ☎041)750-3892

⑩	폐수배출시설 용량 기준 완화로 기업 애로해소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산군)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은 폐수처리시설 제5종 사업장만 가능하며, 제5종 사업장의 배출 물량 기준 완화로 기업 애로 해소

□ 현 황

- 토지이용계획상 지정된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은 제5종 사업장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1)
- 폐수배출시설은 폐수 배출규모에 따라 제1종 ~ 제5종 사업장으로 나뉘며, 제5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이며,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 「물환경보존법 시행령」 별표 13,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4

□ 문제점

- 제5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기준인 50㎥ 미만은 현실적으로 낮게 적용 되어있어 기업 운영 애로
- 특히, 제조업의 특성상 특정 시기(명절, 가정의 달 등)에는 생산량과 함께 폐수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정 기준(최대 배출량 50㎥)이 적용되어 유연한 운영이 불가능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함.

□ 건의사항

- 생산량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 동안에 폐수배출시설 허가부서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을 100㎥까지 완화하여 기업 운영 애로 해소

작성기관

소 속 : 금산군(경제과)

성명: 김덕중 ☎041)750-3034

⑪	지방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을 도입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공개('25.3.) : 교부세 조정률 10년 중 최저 72.2%
⇒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세 감액 금지 및 최저조정을 도입
건의

□ 기초지자체 동향

- 기초지자체는 세입기반이 취약하여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인구감소·고령화로 고정적 행정비용과 복지수요는 지속적 증가
- 조정률 하락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운영 악화 → 지역소멸 위기 가속

□ 주요 문제점

- 보통교부세¹⁾ 조정률 지속 하락²⁾
 - 전국 평균 조정률 : '23년 81.6% → '24년 75% → '25년 72.17%
 - 농촌형·인구소멸지역 : 조정률 70%초반 → 기본 행정 유지도 곤란
 - 재정운용 불안정 및 예측 불가
 - 조정률이 국세 수입에 따라 매년 변동, 자치단체 연간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현저히 저하
 - 조정률 저하와 교부세 미교부로 지방재정 부족 심화
 - 악순환 구조 : 인구감소 → 자체수입 감소 → 보통교부세 감소 → 행정서비스 약화 → 지역이탈 가속
 - 지자체 90%,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 '찬성' (응답자 88곳 중 74곳)
——[자료출처 : '24.11.05.일자 인천투데이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대표발의”]
- ※ 재정 부족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부세를 인상 필요성 대두 : 19.24% + @

□ 건의사항

- 연도 내 교부세 감액 및 미교부 금지 건의
 - 다만, 국가재정위기 등 예외적 상황 시 국회 동의하에 예외적 감액 가능
- 최저조정률 제도 도입 건의
 - 조정률 하락 시에도 자치단체의 최소 재정운용 보장을 위한 필수장치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기획감사담당관)

성명: 강순자 ☎041)830-2026

1) 보통교부세 :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 시켜주는 정책. (재원) 내국세의 19.24%
2) 조정률 하락 요인 : 국세 수입이 예상액보다 감소할 경우 조정률도 함께 하락

⑫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5. 8. 14.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금융지원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농가 대체소득원 창출 및 RE100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건의

□ 현황

-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나 농가의 대체 소득원 확보 방안 미흡
-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지 입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설치 여건이 양호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 또한 「농지법」상 입지 불허용

□ 필요성

-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안정적·장기적 대체소득원 필요
- 농업진흥구역 내 유휴·저생산성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10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업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가 소득 창출 기여
- 농가의 재생에너지 참여 확대를 통해 RE100 이행 기반 마련

□ 건의사항

-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100kW미만, 약 500㎡) 태양광발전시설에 한하여 입지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
 - 「농지법」 제22조 개정 : 재생에너지 설치 시 최소 분할면적 완화 (2천㎡ → 1천㎡)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신설 : 재생에너지(설비 포함) 토지 이용행위 가능 조항 신설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도시건축과)

성 명: 김영일 ☎041)830-2380

⑬	김 가공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추진기간	2026.~2034.	소요예산	654억원(국비 327, 지방비 327)		

◆ 김 가공에 필요한 양질의 담수 공급망과 정수시설 구축으로 안정적인 마른김 생산 체계 마련

□ 현황

- 마서·비인·종천면 지역 김 가공시설(33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 세척수는 1일 약 34,000톤으로, 다량의 물 사용에 따른 인근 지하수, 수원지 등의 고갈이 우려됨.

※ 서천군 연간 물김 생산량 42,000톤, 마른김 가공시설 53개소(연간 생산량 7,697톤)

□ 문제점

- 마른김 가공시설의 물 사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 고갈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됨.
- 마른김 생산에 필요한 세척수 공급과 물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강물을 이용한 안정적인 물 공급망 구축 필요

□ 개선방향

- 물 공급망 및 정수시설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6. ~ 2034.
 - 위 치: (1단계) 금강 ↔ 정수시설 / 수로건설사업과 연계
(2단계) 정수시설 ↔ 마서·비인·종천면
 - 총사업비: 654억원(국 327, 도 163.5, 군 163.5)
 - 사업규모: (1단계) 관로 7.1km, 펌프시설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2단계) 관로 10.8km

□ 건의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및 도비 지원 건의

□ 참고자료

○ 물 공급망 구축 계획(안)



작성기관

소 속: 서천군(수산자원과)

성명: 정창민 ☎041)950-4762

⑭	마른 김 가공 배출수 관련 환경규제 완화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천군)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추진기간	2025. 7.	소요예산	-		

◆ 마른김 가공 배출수와 관련, 「물환경보전법」 상 환경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 현황

○ 마른 김 생산 통계(서천군)

- (마른김 생산량)

(2025. 4. 30.기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어장면적(ha)	3,332	3,332	3,332	3,331	3,331	3,331
마른김 생산량(천속)	11,113	11,345	9,225	11,322	11,793	12,458

- (가공업체 수) 57개 업체(서면 23개, 마서 19개 등)

○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및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마른 김 가공은 세척 공정에서 절단·건조 등 별다른 외부 인자 없이 순수 바닷물과 용수(지하수, 상수도 등)를 사용하는 단순 가공임에도 일반적인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 적용

□ 문제점

- 김 가공 세척수는 약품 등 첨가물이 일절 없고 오염도가 낮으나, 이를 일반폐수로 간주하여, 김 가공시설을 폐수처리시설로 분류하는 문제 발생
- 특히, 겨울철 김 가공 세척수 배출은 해역 영양염류 부족으로 인한 김 황백화 현상을 저감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음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마른 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김가공 배출수에 대한 별도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기준 재검토)을 건의드립니다

작성기관

소 속 : 서천군(수산자원과)

성명: 임정환 ☎041)950-4417

⑮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청양군)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제도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인구감소지역 지역소멸 대응 및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건의

□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수입 기반 감소로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전국 평균	인구감소지역	도내 감소지역	청양군
2023	30.49%	21.89%	19.86%	12.54%
2024	30.36%	10.00%	9.96%	8.39%

○ 자율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시행,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 문제점

-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제한된 현행 구조는 기부액 상향 유도 저해
 - ※ 24년 평균 기부액 11.4만원,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 전체의 98.1%
- 대도시·관광지 대비 인지도 낮은 농어촌 지역은 기부 유치 불리
 - ※ 24년 지자체 모금 1위 제주특별자치도, 2위 광주광역시 동구

□ 건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기존 10만원 ➡ 변경 20만원)

작성기관

소 속 : 청양군(미래전략과)

성명 : 이택진 ☎041)940-2777

⑬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5. 8. 14.	협조부처 (부서명)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하이패스 IC 설치시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현황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차로의 종류

구 분	차로의 종류	적용시스템	비고
현장수납	TCS차로	TCS	일반IC
	축중차로	TCS+축중기	일반IC
하이패스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하이패스IC
	<u>하이패스-축중차로</u>	<u>하이패스+축중기</u>	일반IC
하이패스- 현장수납	혼용차로	하이패스+TCS	일반IC
	축혼용차로	하이패스+TCS+축중기	일반IC

※ 현재 일반IC에 설치되어있는 하이패스(축혼용차로)도 무인으로 운영되며 4.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이 가능하나, 하이패스 나들목은 4.5톤 미만 화물 차량만 통행 가능.

○ IC형식별 사업비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하이패스IC	일반IC	비 고
IC 설치비	120~250	270~350	1.5~2배
유지관리비	1.5~2	4.5~6	매년(3~4배)

※ 해당 사업비는 동홍성IC 설치시 기준으로, 설치 입지 등에 따라 사업비 변동

□ 문제점

- 「도로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로 규정.
-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에 따르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 건의사항

-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을 위해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지침」 제2조 하이패스 나들목 정의 개정

현재	개정(안)
제2조(정의) ③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이 가능하며, --.	제2조(정의) ③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 <u>화물차</u> 만 이용이 가능하며, --.

- 「도로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시 축중차로(축중기) 설치 의무화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적용범위에 따르면“본 지침은 현재까지의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장래 기술발전에 따른 각종 설계조건의 변화 등은 향후 관련분야 의견 및 검토에 따름”이라 되어 있음.

작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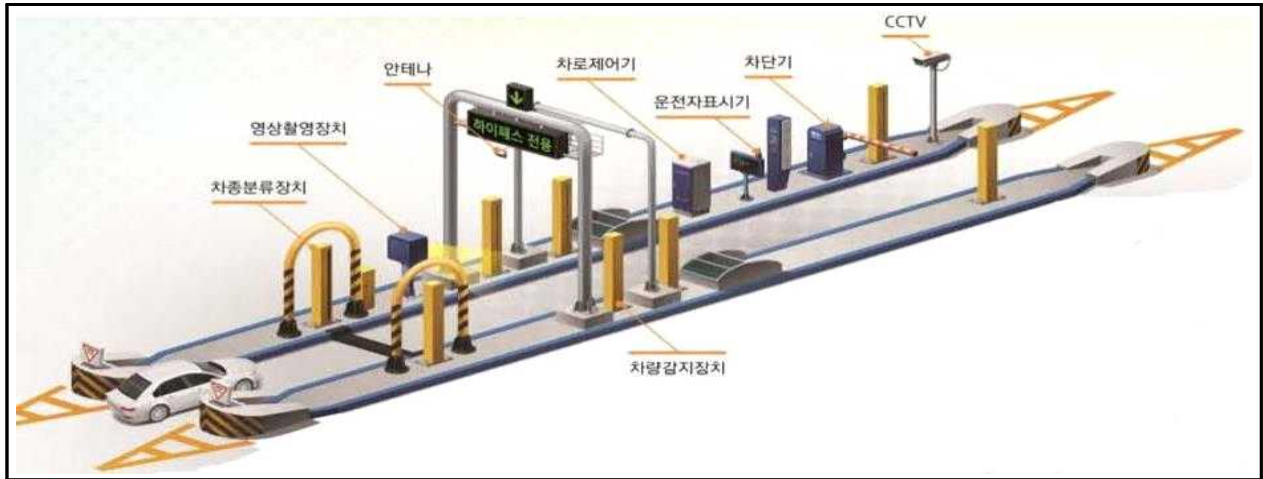
소 속 : 홍성군(교통과)

성명: 이충일 ☎041)630-1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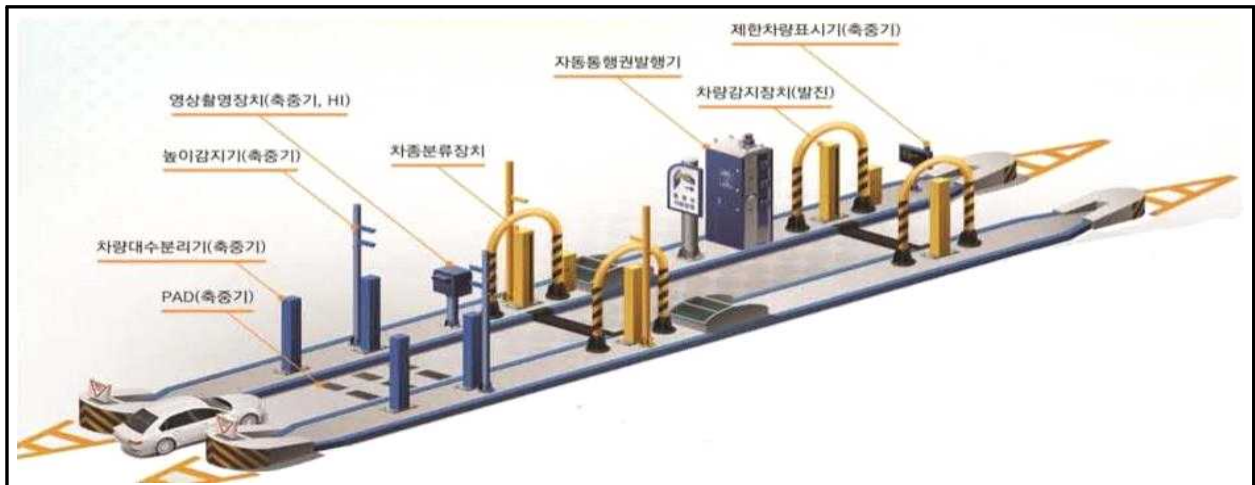
참고 1

나들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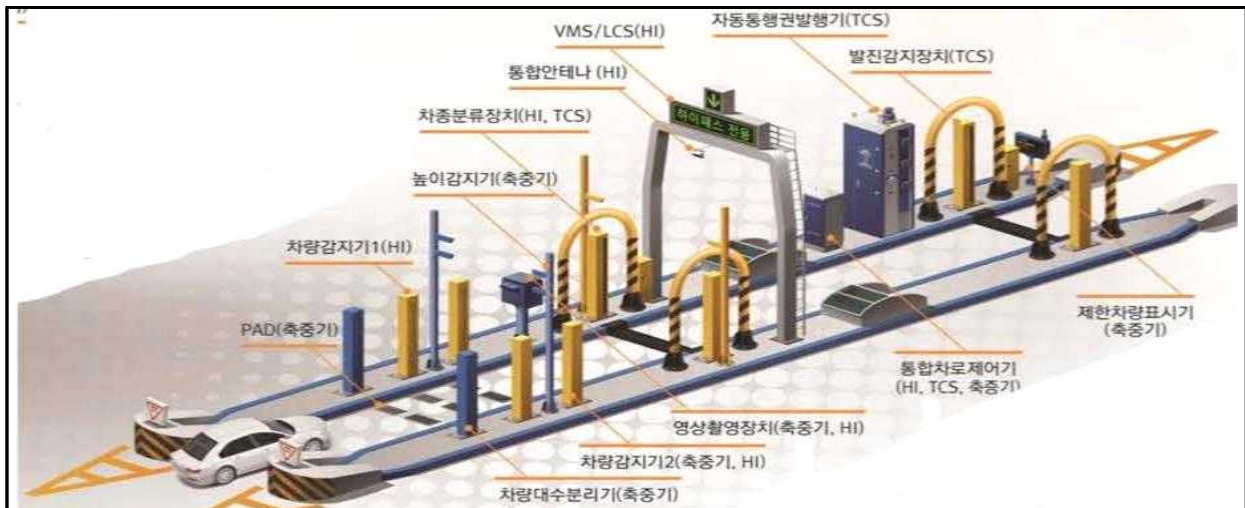
< 하이패스차로 개념도 >



< 축중차로 개념도 >



< 축혼용차로 개념도 >



참고 2 관련규정

○ 「도로법」 제78조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고속국도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 ③ “하이패스 IC”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승용차, 버스, 4.5톤 미만 화물차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국도 상의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IC를 말한다.

○ 「하이패스 나들목 설계지침」

1p 제1장 총칙 / 1.1 목적

하이패스 나들목(IC)이란 하이패스 장착 차량 중 통과허용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본선 또는 부대시설 등에 연결하여 고속국도에 진출입이 가능한 무인 운영 나들목을 말한다.

2p 제1장 총칙 / 1.3 용어의 정의 / 2.

하이패스 나들목(IC)이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 버스, 최대 적재중량 4.5톤 미만 화물차가 고속국도 상의 본선 또는 연결로에 직접 연결하거나 휴게소,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무인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나들목(IC)을 말한다.

⑰	시·도 및 시·군·구 선거법 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5. 7. 22.	협조부처 (부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공직선거법의 합리적 집행과 공정한 선거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 사례의 집단 지식화가 반드시 필요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선거 시기마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 질의
 -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질의·회신 사례가 공식적으로 축적·공유되지 않아, 유사 사례에 대한 반복 질의로 행정력 낭비 발생
- 법령 해석의 통일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질의 및 회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필요

□ 문제점

- 선거법 질의 내용과 회신 결과가 공식적으로 축적되지 않거나, 타 지자체와 공유되지 않아 유사 사례에 반복 질의
- 동일한 법령에 대해 시군구별로 상이한 해석 적용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법령 집행 불균형 초래
- 불필요한 질의와 문서 작업으로 행정력 낭비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유사 사례에 대한 사전 대응 가능, 반복 질의 최소화
- 전국 지자체 간 법령 해석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작성기관

소 속 : 예산군(자치행정과)

성명: 진유미 ☎041)339-7203

⑱	기준인건비 초과지출가능항목 확대 운영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예산군)	건의일자	2025. 8. 14.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추진기간	2025	소요예산	-		

◆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을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가능항목으로 인정 및 페널티 시행 유예 건의

□ 현황

- 폭우·폭설·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확대 운영은 인건비(초과근무수당) 상승을 초래
 - 인건비 상승은 건전한 기준인건비 운영에 한계로 작용
- 25년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페널티*(교부세 삭감) 부여**
 - 초과지출가능항목도 ①공무직근로자 퇴직금, ②실무수습 인건비, ③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액으로 제한

□ 문제점

-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여는 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지자체에 재정부담 가중
- 재난재해 발생 시 초과근무시간 상한 확대나 상한 폐지는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 지난 7. 17. 집중호우로 인한 초과근무 상한 확대에 따라 25년 7월 초과근무수당은 전월 대비 7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

<예산군 7.17 집중호우 인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단위:천원)

구분	25년 7월분	25년 6월분	24년 7월분	증감 (전월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지급액	535,564	304,170	325,003	76%	65%

□ 건의사항

- 폭우, 폭설, 산불 등의 재해재난 복구를 위해 지급 된 초과근무수당을 초과지출가능항목으로 인정되도록 건의
-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항구복구를 위해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여 시행 유예 건의

작성기관 소속 : 예산군(자치행정과) 성명 : 박상훈 ☎041)339-7202

⑬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대체사업(해상풍력) 지원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태안군)	건의일자	2025.7.22.	협조부처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소멸 극복 위한 대체사업(해상풍력 등) 지원 등 건의

□ 현 황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25년부터 폐지 수준
- '37년까지 태안화력 10기 중 8기 폐지 계획, 대체 발전소 건설^{타지역 6기, 미정 2기}

구분	#1	#2	#3	#4	#5·6	#7·8	#9	#10
용량(MW)	500	500	500	500	1,000	1,000	1,050	1,050
폐지시기	'25년	'26년	'28년	'29년	'32년	'37년	'46년	'47년
대체건설	구미	공주	여수	아산	용인	미정	-	-

□ 문 제 점

- 대체산업 등 대안없이 폐지 시 세수·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가속화 예상
- 경제손실 약 7조 8,680억원, 정주민구 3천명 유출 * '21년 산업부 용역결과

□ 건의사항

- ① ‘태안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 1.4GW 규모
 - 해양보호구역 지정 시 집적화단지 지정 구역 제외(해상풍력 예외 규정)
 -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관리부두 '제4차 전국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
-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전력계통 특례, 특별법에 명문화(화력폐지 시 여유 송전량을 기존사업자 우선권 부여)
 - 폐지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 ③ ‘석탄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 및 ‘신규, 대체 수소발전소 건설
 - 태안화력 7~10호기 무탄소 발전소(수소 전소 등)로 전환, 태안 준치 등
 - 폐지부지를 활용한 신규, 무탄소 발전소 건설 * 1GW 규모 - 발전소2기 규모
- ④ ‘기반시설 확충’ 및 ‘대체 산업단지 조성’
 - 국도38호선(이원~대산간) 해상교량 건설로 접근성 개선 및 데이터센터 등 조성 지원

작성기관

소 속 : 태안군(미래에너지과)

성명: 남보현 ☎041)670-2512

Ⅲ. 심의·논의사항

1. 민선8기 3차년도 예산집행 결산감사 보고 58
2. 민선8기 4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63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워크숍 세부일정 심의 ... 67
4. 호우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심의 68

III

심의회·논의사항

1

민선8기 3차년도 예산집행 결산감사 보고

I

세입세출 결산총괄

○ 세입세출결산

- 회 기 : 2024. 7. 1. ~ 2025. 6. 30.
- 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총 세입은 219,488,304원, 총 세출은 137,286,940원이며, 잔액(잉여금)은 82,201,364원입니다.

▶▶▶ 세입예산

(단위 : 원)

구분	계	이월액	공공예금이자수입	자치단체부담금
계	219,488,304	69,368,153	120,151	150,000,000

▶▶▶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원)

구분	세입(A)			지출(B)	잔액(A-B)
	계	예산액 (이월액+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계	219,488,304	219,368,153	120,151	137,286,940	82,201,364

▶▶▶ 계좌별 내역(잔액증명서 참고)

(단위 : 원)

계	수입원	지출원	신용카드결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183,617,444	100,072,250	82,126,643	516,750	901,801

*수입원(100,072,250원)에 3차년도 10개 시군 부담금 및 공공예금이자/신용카드 결제
대금 및 7월중 출금예정/소득세,4대보험 10일 출금

Ⅱ 세입결산

○ 목별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마수납액
합 계	219,368,153	0	219,368,153	219,488,304	219,488,304	0
경상적수입	150,000,000	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0
자치단체부담금	150,000,000	0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0		120,151	120,151	0
보전수입	69,368,153	0	69,368,153	69,368,153	69,368,153	0
순세계잉여금	69,368,153	0	69,368,153	69,368,153	69,368,153	0

Ⅲ 세출결산

○ 목별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219,368,153	137,286,940	82,081,213
지방자치발전	24,000,000	14,059,000	9,941,000
지방자치분권추진	24,000,000	14,059,000	9,941,000
자치분권 활성화	24,000,000	14,059,000	9,941,000
201 일반운영비	12,000,000	4,059,000	7,941,000
03 행사운영비	12,000,000	4,059,000	7,941,000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203 업무추진비	12,000,000	10,000,000	2,000,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00	10,000,000	2,000,000
행정운영경비				195,368,153	123,227,940	72,140,213
	인력운영비			87,711,000	69,840,760	17,870,240
	인력운영비			87,711,000	69,840,760	17,870,240
		101 인건비		87,711,000	69,840,760	17,870,240
			01 보수	14,400,000	14,400,000	0
			02 기타직 보수	73,311,000	55,440,760	17,870,240
	기본경비			107,657,153	53,387,180	54,269,973
	기본경비			107,657,153	53,387,180	54,269,973
		201 일반운영비		18,540,000	4,491,960	14,048,040
			01 사무관리비	17,040,000	4,382,520	12,657,480
			02 공공운영비	1,500,000	109,440	1,390,560
		202 여비		10,800,000	4,135,140	6,664,860
			01 국내여비	10,800,000	4,135,140	6,664,860
		203 업무추진비		4,800,000	4,760,080	39,92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000	3,568,200	31,800
			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000	1,191,800	8,120
		800 예비비및기타		73,517,153	40,000,000	33,517,153
			01 일반예비비	23,517,153	0	23,517,153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0,000	40,000,000	10,000,000

IV 감사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5. 7. 9. ~ 7. 10.(2일간)
- 감사장소 : 금산군청 감사실
- 감 사 반 : 금산군청 감사팀장 외 2인
- 감사범위 : 민선8기 3차 회계연도(24. 7. 1 ~ 25. 6. 30)
- 감사내용 : 예산집행 현황 및 재정운영 상황

○ 감사결과

- 지적사항 2건

① 신용카드 이용대금 처리 부적정

⇒ 2024. 9. 결제일 기한 초과하여 지연입금

(카드대금 결제일인 익월 23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②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흡

⇒ 신용카드 포인트 21,268원 세입조치 미흡

○ 조치결과

① 카드결제 대금 집행 시 1개월 안에 지출

② 신용카드 포인트 21,268원 세입조치 완료

【관련근거】 협의회 회칙 제18조(감사실시)

-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 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발급관리번호 : 0023076538

2025 - 137430

발행일 : 2025년 07월 01일 (10:22:36)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귀하

예금종류	계좌번호	잔액(원)	미결제타점권(원)	관련대출, 질권(천원)
		압류관련사항	최근질권해제이력(1개월)	비고
NH주거래우대기업	301-0252-7728-11	₩100,072,250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통예금	301-0252-7737-11	₩82,126,643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통예금	301-0252-7738-51	₩516,750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통예금	301-0259-2638-91	₩901,801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합계		₩183,617,444	₩0	0

2025년 06월 30일 현재 고객님의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채)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잔액합계 : 일억팔천삼백육십일만칠천사백사십사원



농협은행

보령시청<출>



- 주) 1. 이 증명서는 준법감시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2. 잔액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영업점장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3. 발급기준일 당일에는 해당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4. 미결제타점권, 관련대출·질권, 압류관련사항, 최근 질권해제이력(1개월)은 2025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5. 미결제타점권은 잔액증명 발급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질권해제이력(1개월)은 법인계좌만 표시됩니다.
 본 잔액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행 홈페이지 (<http://banking.nonghyup.com/>) 초기화면의 "빠른조회서비스"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1/1



2

민선8기 4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예산총칙

구 분	예산총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
합 계	232,201	219,368	12,833
일반회계	232,201	219,368	12,833

□ 세입예산(안)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232,201	구성비	219,368	구성비		
경상적 수입	150,000	64.6%	150,000	68.4%	0	
자치단체 부담금	150,000	64.6%	150,000	68.4%	0	회비수입(15시군)
보전수입	82,201	35.4%	69,368	31.6%	12,833	
순세계 잉여금	82,201	35.4%	69,368	31.6%	12,833	

□ 세출예산(안)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합 계	232,201	구성비 100%	219,368	구성비 100%	12,833
지방자치발전	41,200	21.2	24,000	10.9	17,200
지방자치분권추진	41,200	17.8	24,000	10.9	0
자치분권 활성화	41,200	17.8	24,000	10.9	0
행정운영경비	191,001	82.2	195,368	89.1	△12,367
인력운영비	87,166	37.5	87,711	41.1	△545
인력운영비	87,166	37.5	87,711	41.1	△545
기본경비	103,835	44.7	107,657	48.0	△3,822
기본경비	103,835	44.7	107,657	48.0	△3,822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단위:천원)

장 · 관 · 항 · 목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232,201	219,368	12,833
경상적 수입		150,000	150,000	-
	자치단체 부담금	150,000	150,000	-
	◎ 회비 수입 10,000,000원*15개시군	150,000	150,000	-
보전수입		82,201	69,368	12,833
	잉여금	82,201	69,368	12,833
	◎ 순세계잉여금	82,201	69,368	12,833

*순세계잉여금(이월금 82,201,364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단위:천원)

정책 · 단위 · 세부 ·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총계		232,201	219,368	12,833
지방자치발전		41,200	24,000	17,200
지방자치분권추진		41,200	24,000	17,200
자치분권 활성화		41,200	24,000	17,200
201 일반운영비		29,200	12,000	17,200
03 행사운영비		29,200	12,000	17,200
◎ 협의회 회의운영 1,200,000원*6회		7,200	12,000	△4,800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장·군수 워크숍		22,000	0	22,000
203 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0
◎ 자치분권 시책추진 2,000,000원*6회		12,000	12,000	0
행정운영경비		191,001	195,368	△4,367
인력운영비		87,166	87,711	△545
인력운영비		87,166	87,711	△545
101 인건비		87,166	87,711	△545
01 보수		14,400	14,400	0
◎ 파견보조비(수당)		14,400	14,400	0
▷ 600,000원*2명*12월				
02 기타직 보수		72,766	73,311	△545
◎ 전문위원(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72,766	73,311	△545
▷ 연봉 56,838,000원*1명		56,838	55,500	1,338
▷ 4대보험료 500,000원*1명*12월		6,000	8,400	△2,400
▷ 정액급식비 140,000원*1명*12월		1,680	1,680	0
▷ 직급보조비 218,750원*1명*12월		2,625	2,220	405
▷ 시간외근무수당				
12,844원*1명*30시간*12월		4,623	4,511	112
▷ 기타수당(가족수당 등) 1,000,000원*1명		1,000	1,000	0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워크숍 세부일정 심의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워크숍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일정 심의임.

□ 추진근거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4조(사업)
- 민선8기 제3차년도 제4차 회의 심의결과(2025. 3. 11. 계룡시)

□ 워크숍 개요

- 기 간: 2025. 10. 15.(수) ~ 16.(목) 또는 당일
- 장 소: 심의필요
- 참석대상: 충남도내 15개 시장·군수
- 주요내용: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

□ 심의내용

1. 워크숍 개최 장소 후보지(안)

구분	충청남도내 (예산 또는 태안)	공무원교육원 또는 공기업 등	인천광역시 송도
접근성 (원거리 기준)	차량 1시간 이내	차량 2시간 이내	차량 2시간 이내
회의시설	리조트 부대시설	부대시설 활용	호텔 회의실
숙박/식사	리조트 연계가능	부대시설 활용	호텔 연계가능
기타	민선8기 4차년도 회의 미개최지	충남연구원 등 연구·교육기관	-

□ 향후계획

- 워크숍 장소 등 확정 후 시장·군수님 일정협의를 통한 참석 조율
- 용역사를 통한 우수강사 선정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 2025. 7. 16. ~ 20. 집중호우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군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시·군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 1차 선포: 서산, 예산(2025. 7. 22.)
- 추가지정: 천안, 공주, 아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2025. 8. 6.)
- 피해규모 현황(2025. 7. 16. ~ 20.) / 2025. 7. 28. 18:00기준

(단위: 백만원)

소속	계		응급복구율	공공시설		사유시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천안시	1,598	22,899	80.7%	259	19,738	1,339	3,161
공주시	1,854	30,073	90.0%	440	27,584	1,414	2,489
아산시	7,720	40,803	99.0%	244	25,095	7,496	21,409
서산시	1,285	55,049	76.0%	390	47,467	895	7,582
당진시	7,679	29,411	96.0%	516	17,880	7,163	11,531
부여군	3,963	9,820	14.9%	180	5,540	3,783	4,280
서천군	1,904	11,157	87.2%	237	8,893	1,667	2,264
청양군	2,237	11,564	100.0%	169	10,163	2,068	1,401
홍성군	1,515	20,496	84.9%	333	16,403	1,182	4,093
예산군	8,584	86,100	92.0%	379	48,300	8,205	37,800

□ 지원방안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재해재난지원금 예산 30,000천원
- 1안: 피해가 심한 10개지역(서천 포함) 지자체 지원(각 3,000천원 지원가능)
- 2안: 피해지역 과반 이상으로 재난지원금 미지급(5개소 이상 지원사례 없음)

IV. 홍보·협조사항

1. 제28회 보령머드축제(보령)	71
2. 제71회 백제문화제(공주)	73
3. 제3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서천)	74
4. 제6회 예산황새축제(예산)	75
5. 2025년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태안)	77
6. 차기회의 개최 안내(협의회)	78

◆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머드체험!’ 머드 본연의 가치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해양관광축제 제28회 보령머드축제 참여 및 홍보

□ 개요

○ (축 제 명) 제28회 보령머드축제

※ '24년 대한민국 관광정책 대상,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국무총리상,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 (기 간) 2025. 7. 25.(금) ~ 8. 10.(일) / 17일간

○ (장 소) 대천해수욕장 및 머드엑스포광장 일원

○ (주최·주관) 보령시 / 보령축제관광재단

○ (내 용)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

공 식 행 사

개장식, 개막식, 폐막식 3개 행사

체 험 행 사

머드체험존, 머드몹신 등 11개 행사

공 연 행 사

월디페, M-NET 엠카운트다운 등 10개 행사

지 역 상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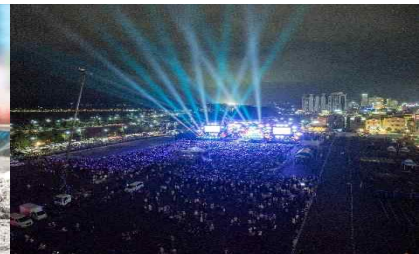
지역소비 촉진 할인쿠폰, 보령특산물판매 등 5개 행사

판 매 홍 보

머드화장품 판매, 글로벌축제박람회 등 3개 행사

연 계 행 사

동행30년 시민한마당 태극트오브 충남 햇쿨등8개 행사



□ 협조사항

○ 직원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보령머드축제 참여 및 홍보 협조

□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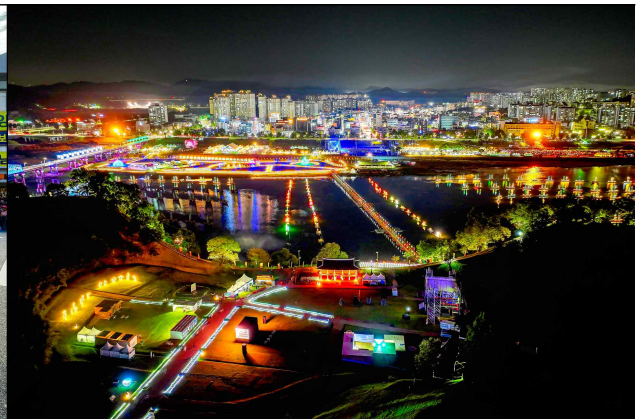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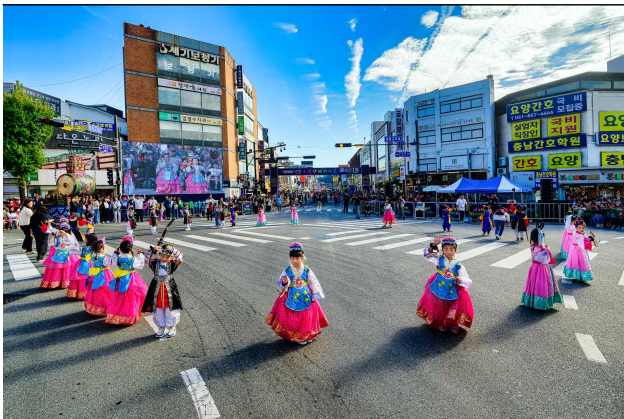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프로그램	장 소	비 고
7. 25.(금)	13:00	• 머드체험존 개장식	머드엑스포광장	
	18:00	• 동행 30년 시민한마당	보령종합경기장	
7. 26.(토)	14:00	•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수욕장 일원	
	15:00	• 월드디제이페스티벌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18:00	• 교류도시 환영만찬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19:00	• 개막식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7. 27.(일)	20:00	• 한여름밤의 콘서트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8. 1.(금)	19:00	• K-힙합 페스티벌 1부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8. 2.(토)	19:00	• K-힙합 페스티벌 2부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21:50	• 드론라이트쇼	머드광장 해변	
8. 3.(일)	18:00	• 제6회 머드가요제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8. 7.(목)	18:00	• M-NET 엠카운트다운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8. 8.(금)	20:00	• 8090나이트쇼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8. 9.(토)	19:30	• KBS K-POP 슈퍼라이브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8. 10.(일)	19:30	• 폐막식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19:00	• TV조선 슈퍼콘서트(트로트)	머드엑스포광장 특설무대	
	20:00	• 드론라이트쇼	머드광장 해변	
상 설	주간	• 머드체험존 (월-목 13:00~18:00, 금-일 10:00~18:00)	머드엑스포광장	8. 6. 휴무
		• 머드몹신	머드엑스포광장	8. 6. 휴무
		• 오픈스퀘어	머 드 광 장	
	야간	• 머드온더비치(20:00~21:30)	머드광장 해변	
		• 머드버스킹(19:00~21:00)	노을의분수 만남의광장	금~일 운영

-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는 제71회 백제문화제 개최

□ 축제개요



- 축 제 명 : 제71회 백제문화제
- 축제기간 : 2025. 10. 3.(금) ~ 10. 12.(일) / 10일간
- 장 소 : 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
- 주 제 : 세계유산 백제, 동탁은잔에 담다
- 주최/주관 : 공주시 /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
- 주요내용
 - 개막행사, NEW 응진판타지아, 응진성 퍼레이드 등
 - 경관 및 포토존 조성, 응진골 맛집 운영 등



□ 협조사항

- 많은 도민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별 홍보매체 (유튜브, SNS, 전광판 등)를 활용한 적극 홍보 요청

- ◆ 전국 최대의 맥문동 군락지인 장항 송림 자연휴양림의 맥문동꽃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먹거리가 어우러진 축제 개최

□ 개요 · 현황

- 기 간: 2025. 8. 28.(목)~8. 31.(일) / 4일간
- 장 소: 장항 송림자연휴양림 일원
- 주최/주관: 서천군/맥문동꽃축제추진위원회
- 주요내용: 맥문동 꽃피는 절정기간에 맞춰 공연, 체험, 전시, 판매 등

□ 세부프로그램

- (공연) 개 · 폐막식, 캔들라이트, 서천 플레이리스트 등
- (경연) 맥문동 드레스코드, 맥문동 사진전 등
- (체험) 맥문동 조향실, 맥문동 요가, 맥문동 놀이터 등
- (홍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생태원 등 지역 연계 부스 운영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제3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 ‘황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 황새의 홍보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체험활동을 담은 제6회 예산황새축제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 현황

- 축 제 명 : 제6회 예산황새축제 『육남매』
- 기 간 : 2025. 9. 6.(토) ~ 7.(일)
- 장 소 : 예산황새공원 일원(예산군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
- 주최·주관 : (사)예산황새 생태관광협의회
- 프로그램
 - 경연대회 : 예산 황새 전국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 프로그램
 - 황새둥지사건 “육남매의 비밀” (야외 추리 체험극)
 -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미션)
 - 황새 관찰 투어
 - 황새워터밤, 유·무료체험 등
 - 홍보부스
 - 먹거리 & 플리마켓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제6회 예산황새축제 개최 홍보 협조



2025-2026 충남·예산·영동지역



충남이면 중분해
2025-2026 충남영동지역

힘들었지만 황새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아련한 그때 그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산황새공원 개관10주년



제6회 예산황새축제 육남매

2025. 9. 6.(토) - 7.(일) 예산황새공원 일원





황새 둥지 사건

육남매의 비밀

I'll be back



황새 6남매가 돌아왔다



황새워터밤



예산황새축제



예산황새축제

주최·주관  예산황새 생태관광협의회

후원  예산군  예산군의회

문의 041) 339-8367

5

2025년 태안군 해수욕장 운영

【 태안군 】

- ◆ 서해안 최고 관광휴양도시 태안군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해수욕장 22개소가 일제히 개장(7.5.)함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등 홍보 협조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5. 7. 5. ~ 8. 24. / 최대 51일간
 ┌ (만리포) 2025. 7. 5.(토) ~ 8. 24.(일) 10:00 ~ 19:00 / 51일간
 └ (이 외) 2025. 7. 5.(토) ~ 8. 17.(일) 10:00 ~ 19:00 / 44일간
 ○ 운 영 : 22개소(주요 해수욕장 6, 일반 해수욕장 16)

연번	욕장명	사진	개장기간	비고
1	만리포 해수욕장		7. 5.(토) ~ 8. 24.(일) 10:00 ~ 19:00	야간개장 (8.13.~8.17.) ※21시까지
2	갈음이 해수욕장		7. 5.(토) ~ 8. 17.(일) 10:00 ~ 19:00	
3	꽃지 해수욕장			
4	꾸지나무골 해수욕장			
5	천리포 해수욕장			
6	연포 해수욕장			

* 이외 일반 해수욕장 16개소도 정상 운영

□ 협조사항

-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관심

6

차기 회의 개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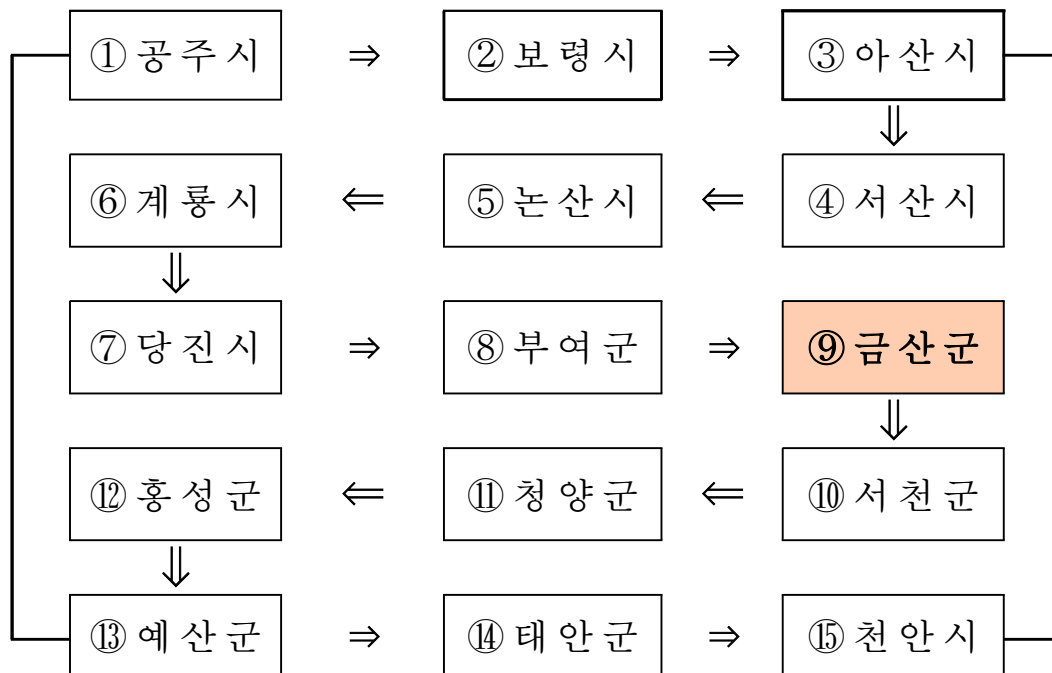
【 사무국 】

□ 개요

- 개최시기 : 2025. 9월 중
- 개최장소 : 금산군

※ 협의회 회의지역 순회결정: 민선8기2차년도제2차 정기회의(부여군, 2023.11.7.)

<시·군 직제순서에 의거 개최>



* 민선8기 2회('22.'23년) 회의를 개최한 천안시는 순번 마지막으로 배치

V.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주요내용 ... 81
2. 민선8기 1-3차년도 우수 건의사항 선정결과 보고 ... 83
3.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칙 85

참고 1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주요내용

□ 유보통합 및 돌봄통합 대응계획

◆ 새 정부 공약에 따른 유보통합 정책 및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 3.)에 따른 협의회 대응방안 보고

■ 개요

○ 정부공약: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 목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 이행방법

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지원 강화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②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노인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유보통합 동향: 더불어민주당에서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였으나, 25. 2. 이후 자치단체의 반대여론으로 논의 잠정 중단

○ 돌봄통합 동향: 돌봄통합 관련 시범사업 100개 시·군·구로 확대, 25년 하반기 중 조직 인력 등 기반마련 추진

-> 돌봄통합지원법에 시·군·구 책임성은 높아졌으나 정부책임성은 미흡

■ 향후 대응계획

○ 새 정부 유보통합 상세 계획안 발표 시 적극 대응

-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대응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건의

-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및 관련 법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국가 재정 책임성 강화 요청

- 돌봄통합 운영 예산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지원 요청

- 기준인건비에 돌봄통합 조직 및 인력 확대 반영 요청

○ 돌봄통합 사업 추진 시 기초와 협의 및 의견수렴 적극 반영 요구

-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협의회 건의 대선공약 과제 반영 상황

◆ 대한민국협의회가 건의한 대선공약 과제 중 대통령 정책공약 반영상황 및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 지역균형발전 분야

- 지역균형발전 공약과제 중 자치분권, 재정분권, 지역경제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등에 협의회가 건의한 5개 공약과제 반영

구분	주요공약	협의회 공약과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5극, 3특 기반 마련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1명 -> 4명)
재정분권	▶지방교부세 확대 및 지방 자치단체 자체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기간 연장 규모확대, 평가체계 개선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교부(19.24% -> 24.24%)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확대 (일몰폐지, 1조원 -> 5조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대표 중견기업 발굴 육성	▶지역연고산업 활성화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2,000만원 한도에서 법인기부 허용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편 (세액공제 확대, 법인기부 허용)

■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분야

- 초등학생·어르신 공약과제에서는 9개 세부과제 제안, 지역사회통합 돌봄체계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협의회 공약과제와 연계

구분	주요공약	협의회 공약과제
돌봄통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유보통합 추진 방안 재검토 ▶돌봄통합 시행의 국가 책임성 강화

■ 향후 대응계획

- (국정과제 추진) 새 정부 공약과제로 반영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협의회 공약과제에 대한 국정과제 추진 (국정기획위 건의 등)
-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추진) 협의회에서 제안한 21대 공약과제에 대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통한 제도화 추진

◆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의사항 제안 시·군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진행한 우수 건의사항 선정 결과임.

□ 추진근거

-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4조(사업)
- 민선8기 제3차년도 제4차 회의 심의결과(2025. 3. 11. 계룡시)

□ 최종평가결과

- 평가대상 : 202건(민선8기 1~3차년도 건의사항 전체)
- 평가기준 :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발전 기여도, 확산 적용 가능 여부 등
- 평가방법 : 정량(40%) + 정성(60%)
 - 정량: 건의건수 + 평균 건의건수 이상 시 가점부여
 - 정성: 1차 선별된 건의내역에 대해 평가위원 5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 : 6명(충남연구원 등)
- 최종결과

시·군	특점내역			시·군	특점내역		
	계	정량	정성		계	정량	정성
천안	21	12	9	금산	22	16	6
공주	19	14	5	부여	42	27	15
보령	25	18	7	서천	8	8	0
아산	21	16	5	청양	17	14	9
서산	17	13	10	홍성	29	26	3
논산	31	23	8	예산	25	18	7
계룡	25	19	6	태안	9	9	0
당진	34	19	15				

《1차평가》 - 정량평가

○ 평가방법(기본점수: 건의 수 3점 / 부가점수: 평균이상 건의 시·군은 구간별 가점)

시·군	득점내역			시·군	득점내역		
	제안건수	1차선별	득점		제안건수	1차선별	득점
천안	10	4	30	금산	13	3	42
공주	12	3	36	부여	21	4	68
보령	14	3	45	서천	7	1	21
아산	13	3	42	청양	12	4	36
서산	11	3	33	홍성	19	3	67
논산	18	4	58	예산	14	4	45
계룡	15	5	49	태안	8	1	24
당진	15	4	49				

《2차평가》 - 정성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 의거 위원별 우수건의 10건씩 선정하여 순위 부여

○ 평가기준 : 정책효과성, 재정건전성 등 5개 항목

시·군	득점내역	시·군	득점내역
천안	15	금산	10
공주	9	부여	25
보령	13	서천	0
아산	9	청양	15
서산	17	홍성	5
논산	14	예산	12
계룡	11	태안	0
당진	25		

□ 이후계획 및 행정사항

○ 민선8기 4차년도 예산 반영과 연수자 대상 의견수렴(여행시기 등) 실시

○ 각 시·군 연수대상자 명단 확정으로 세부계획(여행지, 자유여행 유무 등) 수립

* 1~3순위 중 연수 미희망 시·군 발생 시 차순위로 대체 선정 후 사업추진

○ 우수건의사항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를 빛낸 공무원 표창계획 수립

* 민선8기 4차년도 하반기 회의에 맞춘 표창 수여식 예정(2026. 3. 또는 5.)

(제정) 1998. 8. 22.
 (일부개정) 2019. 5. 27.
 (일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0. 7. 13.
 (일부개정) 2021. 9. 7.
 (일부개정) 2023. 4. 26.
 (일부개정) 2025.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는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결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① 협의회회의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군수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부군수가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는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 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상징물) ①협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상징물은 ‘통합브랜드’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ChungCheongNamDo Association of Mayor